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0. 23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김해철 의원 등 8명
- 발의일자: 2025. 10. 2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10. 23.)

2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서구 실정에 부합하는 보훈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·시행, 공훈선양사업, 조사·연구 지원 및 민간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공훈을 기리고, 구민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함양하여 지속적인 보훈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보훈발전계획 수립 근거(안 제4조)
- 라. 공훈선양사업 추진 근거(안 제5조)

마. 조사·연구 지원 근거(안 제6조)

바. 민간참여 촉진과 협력체계 및 자문(안 제7조~제8조)

사. 사업 위탁, 보조금 지원,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(비대상)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, 지역내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 추진 및 민간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,
- 안 제4조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6조에서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참여 여건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, 안 제8조에서 관계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 법인·단체에 일부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우리구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보훈단체(10개) 지원 및 보훈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이에 더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애국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수립 및 조사·연구 등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기 조례 제정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